충청북도 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 조례안

의 안 번 호	414

제출연월일 : 2006년 월 일
제 출 자 : 충 청 북 도 지 사

□ 제안이유

충북천년대종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·보존을 도모하고자 함

□ 주요골자

○ 종의 명칭은 □충북천년대종□으로 함(안 제2조)

○ 종의 보존과 안전관리 규정을 정함(안 제5조)

○ 타종시기를 정함(안 제6조)

- 제야, 3·1절, 광복절 행사
- 각종 기념일, 경축행사, 주요 민속일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

□ 의안 전문 : 따로붙임

□ 신·구조문 대비표 : 해당없음

□ 관계법령 발췌 : 따로붙임

충청북도 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새천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건립된 대종 및 종각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종의 명칭은 충북 천년대종(이하 " 천년대종" 이라 하며, "종 및 종각"을 포함한다)이라 한다.

제3조(위치) 천년대종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755번지에 위치한다.

제4조(대상시설) 천년대종의 대상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종 : 1구
   - 규격 : 높이 3.89m, 바깥지름 2.24m
   - 무게 : 21톤
   - 재질 : 주석, 구리
2. 종각 : 1동
   - 건축면적 : 21평
   - 건축형태 : 전통한식 목조 팔작지붕, 모로단청

제5조(관리) ① 도지사는 천년대종의 화재, 도난, 훼손, 멸실 등의 예방 및 기타 그 보존을 위하여 성실히 관리 보호하여야 한다.

② 천년대종의 안내 및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내원을 배치할 수 있다.

제6조(타종) 천년대종은 제야, 3.1절, 광복절 행사에 타종하되 각종 기념일, 경축행사, 주요 민속일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도 타종할 수 있다.

제7조(타종 주관부서 및 타종대상자 선정) 천년대종 타종 주관부서는 기념일 등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하며, 타종대상자는 타종 주관부서에서 선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關係法規(拔萃)

□ 지방자치법(법률 제7849호)

第15條 (條例) 地方自治團體는 法令의 범위안에서 그 事務에 관하여 條例를 制定할 수 있다. 다만, 住民의 權利制限 또는 義務賦課에 관한 사항이나 罰則을 정할 때에는 法律의 委任이 있어야 한다.

□ 지방분권특별법(법률 제7060호)

제12조 (자치행정역량의 강화)

①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제정범위가 확대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하여는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만을 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과 인력관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.

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공무원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교육훈련제도를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